

보고 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보고 자
104	제 13 차	1985. 6. 13	총재 최창익

보 고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

보고 사항 최근 기업의 회사채발행규모가 대형화하여 금융기관이
회사채를 분할보증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 따라
다수의 금융기관이 사채보증채무의 인수방법을 통해
사실상 「신디케이션」 방식에 의한 회사채 분할지급
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「금융기관여신
운용세칙」을 개정하여 금융기관간에는 회사채보증
채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에 이를 보고함.

1974



보고 관계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제 2조 (금융기관의 여신운용
법규조항 및 투자지침)

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 73조 제 1항 제 2호에서
정하는 불건전한 여신 또는 투자를 조태하지 않도록
다음 사항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.

1 - 7. (생략)

8.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대출, 투자, 지급보증 및
인수업무의 취급 기준과 용도별 한도의 준수

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제 4조 (금융통화은행의
에 대한 보고)

한국은행총재는 제 2조 제 8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
기관의 여신취급 기준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금융
통화은행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참고 사항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계정내용

(붙임)

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 내용

현행	개정
제 1조 - 제 6조 생략 제 7조 (사채보증 및 인수) ① - ② 생략 ③ 금융기관은 타금융기관(비은행 금융기관포함)의 사채보증을 위한 지급보증과 사채보증 채무의 인수를 할 수 없다.	제 1조 - 제 6조 생략 제 7조 (사채보증 및 인수) ① -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기관은 타금융기관(비은행 금융기관포함)의 사채보증을 위한 지급보증과 비은행금융 기관의 사채보증 채무의 인수를 할 수 없다
④ 생략 제 8조 - 제 10조 생략 (신선)	④ 현행과 같음 제 8조 - 제 10조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세칙은 1985. 5. 22. 부터 시행한다.

1976